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4. 1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4.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4. 20) 상정 보류

○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6.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가. 제안이유

- 청소년관현악단의 파트별 지도강사를 교향악단 상임단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간부단원(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위촉시 복수추천하여 특별전형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간부단원이 교수급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자임을 감안하여 복수추천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단원의 효율적인 위촉을 위하여 제2항의 단원위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는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 실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일반단원을 위촉함에 있어 외국인도 실력이 우수할 경우 특별전형으로 위촉함(안 제6조제1항)
- 예술단원으로 위촉된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1인 추천할 경우 단장이 절대적 위촉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닌지? | ○ 단장은 부시장이나 예술단 대표 및 예술감독과 협의 후 추천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 ○ 꼭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 ○ 관악기에 외국인들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임 |
|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인가? | ○ 예술단원들의 종합적인 판단임 |
| ○ 외국인을 채용하여 조화가 가능한지? | ○ 우리 나라 수석단원급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외국인을 채용하여 우리 시 예술단원들이 벤치마킹하여 실력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 인원제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원제한 규정 신설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수정안요지
 - 별 첨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관련 제466호 |
| 의결년월일 | 2001. 6. 15 (제87회) |

제출년월일 : 2001. 6. 14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간부단원을 복수추천을 하지 않고 1명만 추천할 경우 민주적 절차가 배제되는 정실인사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우수 외국단원이 채용되어 시립예술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외국인들이 많이 채용되어 우리 예술단원이 소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술단원의 채용에 제한 규정을 신설

주요골자

- 간부단원을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을 현행대로 단장의 2인 이상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위촉하도록 조성(안 제6조제1항제2호)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율”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특별전형으로”를 “정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수 | 정 | 안 |
|-----------------|---|-----------------|---|-----------------|-----------------|---|-----------------|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

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는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 실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일반단원을 위촉함에 있어 외국인도 실력이 우수할 경우 특별전형으로 위촉함(안 제6조제1항)
- 예술단원으로 위촉된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부천시립예술단체”를 “부천시시립예술단체”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도강사는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외국인 예술단원의 숙소제공)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국인 예술단원의 국내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중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u> | <u>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u> |
| 제3조(구성) ①(생략) |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
| 1.~3. (생략) | 1.~3. (현행과 같음) |
| 4. 청소년관현악단은 지휘자 1명의 간부단원과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 4. <u>다만, 지도강사는 교향악단 상임 단원이 겸할 수 있다.</u>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②~④(생략) | ②~④(현행과 같음)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생략)

1. 간부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3. 및 4. (생략)

②~③(생략)

<신설>

제18조(생략)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및 4.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 예술단원의 숙소제공)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국인 예술단원의 국내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중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현행과 같음)